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

반(공동강요)

[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. 11. 6. 2015고단628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 윤석환(기소), 신은정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영재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2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